

2026/27

건축법규2

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

엠북 건축/지적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PDF 전자책
- ★ 법, 영/규칙 종합, 기출 지문 포함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2시간 58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건축법규2

ISBN : 979-11-7393-331-8

발간일 : 2026-08-18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2,000원



건축법규2

[목차]

제1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(p3)

제2편 건축물설비기준규칙(p45)

제3편 주차장법(p59)

제4편 국토계획법(p113~131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

건축물의 피난/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규칙)

[약어]

법은 건축법

부령은 국토교통부령

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
근생은 근린생활시설

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

두께의 단위는 별도 표시없으면 센티미터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규칙 제목

검은색은 규칙

남색은 건축법

보라색은 건축법 시행령

하늘색은 건축기사,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

붉은색은 2회 이상 출제

노란색 형광펜은 5회 이상 출제

1조 목적

- 건축물 피난/방화 등 기술적 기준 정함

2조 내수재료

- 벽돌, 자연석, 인조석, 콘크리트, 아스팔트, 도자기질재료, 유리,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

3조 내화구조

가. 벽

- 1)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이상
- 2) 골구 철골조로 양면 두께 4 이상 철망모르타르(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정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나 두께 5cm 콘크리트블록/벽돌이나 석재로 덮은 것
- 3) **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**/벽돌조나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 두께 5 이상
- 4) **벽돌조** 두께 19 이상
- 5) 고온/고압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이나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 두께 10 이상

나.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다음 것

- 1) **철근콘크리트조**나 **철골철근콘크리트조**로 두께 7 이상
- 2) **골구 철골조**로 양면 두께 3 이상 **철망모르타르**나 두께 4 이상

콘크리트블록/벽돌이나 석재로 덮은 것

3)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/벽돌조나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 두께 4 이상

4) 무근콘크리트조, 콘크리트블록조, 벽돌조나 석조로 두께 7 이상

다. 기둥은 작은 지름 25cm 이상인 다음 것

- 고강도 콘크리트(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) 사용시 장관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

1)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

2) 철골을 두께 6(경량골재 사용시 5)이상 철망모르타르나 두께 7 이상 콘크리트블록/벽돌나 석재로 덮은 것

3) 철골을 두께 5 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

라. 바닥

1)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 10 이상

2)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/벽돌조나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 두께 5 이상

3) 철재 양면을 두께 5 이상 철망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덮은 것

마. 보(지붕틀 포함)

-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시 장관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

1)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

2) 철골을 두께 6(경량골재 사용시 5)이상 철망모르타르나 두께 5 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

3) 철골조 지붕틀(바닥에서 그 아랫부분까지 높이 4m 이상인 것에 한함)로서 바로 아래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 있는 것

바. **지붕**(두께 무관)

- 1) **철근콘크리트조**나 **철골철근콘크리트조**
- 2) **철재**로 보강된 **콘크리트블록조/벽돌조**나 **석조**
- 3) **철재**로 보강된 **유리블록**이나 **망입유리**(두꺼운 판유리에 철망 넣은 것)으로 된 것

사. **계단**(두께 무관)

- 1) **철근콘크리트조**나 **철골철근콘크리트조**
- 2) **무근콘크리트조, 콘크리트블록조, 벽돌조**나 **석조**
- 3) **철재**로 보강된 **콘크리트블록조, 벽돌조**나 **석조**
- 4) **철골조**

아. **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**(이하 **원장**)이 장관 고시 방법에 따라 품질 시험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

자. 다음 것으로서 원장이 장관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함 인정

: 원장이 인정한,

- 1) **내화구조** 표준으로 된 것
- 2) 성능설계에 따라 **내화구조**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

차. 원장이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

4조 **방화구조**

가. **철망모르타르**로서 **바름두께 2 이상**

나. **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나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 합계 2.5 이상**

다. **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 두께 합계 2.5 이상**

라) **심벽에 흠으로 맞벽치기한 것**(두께 무관)

마)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

5조 난연재료

-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, 열방출량 등이 장관 고시 난연재료의 성능기준 충족

6조 불연재료

가) 콘크리트, 석재, 벽돌, 기와, 철강, 알루미늄, 유리, 시멘트모르타르, 회

- 시멘트모르타르, 회 등 미장재료 사용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함

나)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장관 고시 불연재료 성능기준 충족

다) 가)와 유사한 불연성 재료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재료

- 가)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때는 제외

7조

1. 준불연재료

-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, 열방출량 등이 장관 고시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충족

2. 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

-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, 난연재료 아닌 단열재 사용 및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시

1. 직통계단의 설치기준

가.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, 디스플레이 패널, 이차전지 제조하는 공장은

- 보행거리 75,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가 되게 설치 가능

나.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시 기준

1)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(직통계단 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때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)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/2 이상

- 단, 스프링클러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1/3 이상

2) 각 직통계단 간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 설치

2.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

가. 건축물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

-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 기계실, 보일러실, 전기실 등 건축설비 설치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

- 건축설비 설치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

나.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 거쳐 상/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

다. 구조/설비

1) 피난안전구역 바로 아래층과 위층은 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 설치

- 아래층은 최상층 거실의 반자나 지붕 기준 준용
- 위층은 최하층 거실 바닥 기준 준용
- 2) 피난안전구역 **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**
- 3)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
- 4) **비상용 승강기**는 피난안전구역에서 **승하차 가능**
- 5) 피난안전구역에 **식수공급 급수전 1개소 이상**, 예비전원 조명설비 설치
- 6) 관리사무소,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 가능한 경보, 통신시설 설치
- 7) **면적은 (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× 0.5) × 0.28제곱미터**
- 8) **높이 2.1m 이상**
- 9) 배연설비 설치
- 10)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 설비 구비

9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

가. 건축물 **5층 이상**이나 **지하 2층 이하**의 층에서 **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**(지하 1층 건축물은 5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)은 **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**

나. **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**(옥내 피난계단)

- 1) 계단실은 **창문등(창문, 출입구, 개구부)**를 **제외**한 건축물 다른 부분과 **내화구조 벽**으로 구획
- 2) **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**(바닥,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) **마감**(마감 위한 바탕 포함)은 **불연재료**
- 3) 계단실에 **예비전원 조명설비**
- 4) 계단실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(**1제곱미터** 이하 망이 들어 있는 유리 불박이창

제외)은 건축물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에서 2m 이상

5) 건축물 **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등**(출입구 제외)은 1제곱미터 이하 망이 들어 있는 유리 불박이창

6)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**출입구 유효너비는 0.9m 이상**

- **출입구에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**,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**60분+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**
단,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으면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

7) **계단은 내화구조**로 하고 **피난층이나 지상 직접 연결**

다.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(옥외 피난계단)

1) 계단은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(1제곱미터 이하 망이 들어 있는 유리 불박이창은 제외)에서 2m 이상

2)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**출입구에 60분+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**

3) (출입구가 아니라) **계단 유효너비 0.9m 이상**

4) **계단은 내화구조**로 하고 **지상 직접 연결**

라. 특별피난계단

1)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해 연결하거나 외부로 향해 열 수 있는

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(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)이나

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 있는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 통해 연결

2) 계단실/노대, 부속실(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 부속실 포함)은 창문등 이외는

내화구조 벽으로 구획

3) 계단실과 부속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(바닥,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)

마감(마감 위한 바탕 포함)은 불연재료

4) **계단실에 예비전원 조명설비**